

2023년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 의사록

2023년 9월 21일

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권경영위원회

1. 회의일시: 2023. 9. 21.(목) 14:00 ~ 16:30
2. 회의장소: 모두누림센터 3층 누림강의실2
3. 출석상황: 의결권자 총 6명 중 5명 참석
 - 위원장(1): ○○○
 - 위 원(4):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
4. 위 원 장: ○○○
5. 간 사: ○○○
6. 서 기: ○○○

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○○○은 위원장석에 등단하여, 위와 같은 출석으로 2023년도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 개회 선언에 이어 각 의안에 대해 심의하며 붙임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.

2023년 9월 21일

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권경영위원회

□ 심의결과

의안번호	의안명	주요내용	결과
제1호	인권경영 선언문 심의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권경영 선언문</p> <p>우리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, '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'을 지향한다. 이를 위해 우리는 재단의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적극 실천하며,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.</p> <p>하나, 우리는 인권, 노동, 환경,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.</p> <p>하나,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,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.</p> <p>하나,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, 종교, 장애, 성별·성적 지향, 학력, 나이, 출신 지역, 정치적 견해, 문화적 차이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.</p> <p>하나, 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,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.</p> <p>하나,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.</p> <p>하나,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.</p> <p>하나, 우리는 시민, 협력사,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발전을 추구한다.</p> <p>하나,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며,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.</p> <p>하나, 우리는 양성평등 실현을 우선 가치로 하여, 고객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.</p>	원 안 의
제2호	인권경영 지침(안) 심의	<p>○ 제9조(책임있는 협력사 관리) 일부 개정 - 제9조제2항 중 "인권침해가 발생하지 노력해야 하며"를 "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"로 한다.</p> <p>○ 제19조(인권경영 주관부서) 일부 개정 - 제19조제2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5. 인권경영 실태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</p> <p>○ 제29조(인권영향평가) 일부 개정 -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① 재단은 인권경영 실천 및 인권경영 점검의무 준수를 위해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 ② 재단은 구성원의 인권의식 수준 진단 및 제고를 위해 인권경영 실태조사(설문조사)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</p> <p>○ 제30조(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) 일부 개정 - 제30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6. 재단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개한다.</p>	수 정 가 결

의안 번호	의안명	주요내용	결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3호	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평가분야</th> <th colspan="5">답변결과</th> <th colspan="2">평가결과</th> </tr> <tr> <th>예</th> <th>보완 필요</th> <th>아니 요</th> <th>정보 없음</th> <th>해당 없음</th> <th>점수</th> <th>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</td> <td>19</td> <td>10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83.2</td> <td>나</td> </tr> <tr> <td>2. 고용상의 비차별</td> <td>14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100.0</td> <td>가</td> </tr> <tr> <td>3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</td> <td>4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11</td> <td>100.0</td> <td>가</td> </tr> <tr> <td>4. 강제 노동의 금지</td> <td>5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5</td> <td>100.0</td> <td>가</td> </tr> <tr> <td>5. 아동노동의 금지</td> <td>4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9</td> <td>100.0</td> <td>가</td> </tr> <tr> <td>6. 산업안전 보장</td> <td>20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1</td> <td>100.0</td> <td>가</td> </tr> <tr> <td>7.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</td> <td>2</td> <td>4</td> <td>1</td> <td>0</td> <td>1</td> <td>62.5</td> <td>라</td> </tr> <tr> <td>8.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</td> <td>1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7</td> <td>100.0</td> <td>가</td> </tr> <tr> <td>9. 환경권 보장</td> <td>3</td> <td>2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13</td> <td>87.5</td> <td>나</td> </tr> <tr> <td>10. 고객 인권 보호</td> <td>15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100.0</td> <td>가</td> </tr> <tr> <td>11. 직원 인권 보호</td> <td>14</td> <td>1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95.8</td> <td>가</td> </tr> <tr> <td>계</td> <td>101</td> <td>17</td> <td>1</td> <td>0</td> <td>47</td> <td>93.6</td> <td>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평가분야	답변결과					평가결과		예	보완 필요	아니 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점수	등급	1.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	19	10	0	0	0	83.2	나	2. 고용상의 비차별	14	0	0	0	0	100.0	가	3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4	0	0	0	11	100.0	가	4. 강제 노동의 금지	5	0	0	0	5	100.0	가	5. 아동노동의 금지	4	0	0	0	9	100.0	가	6. 산업안전 보장	20	0	0	0	1	100.0	가	7.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	2	4	1	0	1	62.5	라	8.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	1	0	0	0	7	100.0	가	9. 환경권 보장	3	2	0	0	13	87.5	나	10. 고객 인권 보호	15	0	0	0	0	100.0	가	11. 직원 인권 보호	14	1	0	0	0	95.8	가	계	101	17	1	0	47	93.6	가	연 애 의
평가분야	답변결과					평가결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예	보완 필요	아니 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점수	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	19	10	0	0	0	83.2	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고용상의 비차별	14	0	0	0	0	100.0	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4	0	0	0	11	100.0	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 강제 노동의 금지	5	0	0	0	5	100.0	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. 아동노동의 금지	4	0	0	0	9	100.0	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. 산업안전 보장	20	0	0	0	1	100.0	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.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	2	4	1	0	1	62.5	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.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	1	0	0	0	7	100.0	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. 환경권 보장	3	2	0	0	13	87.5	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. 고객 인권 보호	15	0	0	0	0	100.0	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1. 직원 인권 보호	14	1	0	0	0	95.8	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101	17	1	0	47	93.6	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4호	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주요사업</th> <th colspan="5">답변결과</th> <th colspan="2">평가결과</th> </tr> <tr> <th>예</th> <th>보완 필요</th> <th>아니 요</th> <th>정보 없음</th> <th>해당 없음</th> <th>점수</th> <th>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유엔아이센터 스포츠 프로그램</td> <td>18</td> <td>4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88.9</td> <td>나</td> </tr> <tr> <td>모두누림센터 스포츠 프로그램</td> <td>18</td> <td>4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88.9</td> <td>나</td> </tr> <tr> <td>여성비전센터 교육</td> <td>18</td> <td>4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88.9</td> <td>나</td> </tr> <tr> <td>계</td> <td>53</td> <td>13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0</td> <td>88.9</td> <td>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주요사업	답변결과					평가결과		예	보완 필요	아니 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점수	등급	유엔아이센터 스포츠 프로그램	18	4	0	0	0	88.9	나	모두누림센터 스포츠 프로그램	18	4	0	0	0	88.9	나	여성비전센터 교육	18	4	0	0	0	88.9	나	계	53	13	0	0	0	88.9	나	연 애 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요사업	답변결과					평가결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예	보완 필요	아니 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점수	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엔아이센터 스포츠 프로그램	18	4	0	0	0	88.9	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모두누림센터 스포츠 프로그램	18	4	0	0	0	88.9	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여성비전센터 교육	18	4	0	0	0	88.9	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53	13	0	0	0	88.9	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2023년도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 수정가결사항

○ 제2호 의안 인권경영 지침(안) 수정가결 내역

원안	수정가결
제9조(책임있는 협력사 관리) ① (생략) ② 재단은 사업의 진행 중 협력기관(단체)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노력해야 하며, 협력기관(단체)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협력기관(단체)과의 거래를 중지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제9조(책임있는 협력사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재단은 사업의 진행 중 협력기관(단체)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, 협력기관(단체)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협력기관(단체)과의 거래를 중지하여야 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

□ 회의록(참석자 발언 요지)

[제1호 의안: 인권경영 선언문 심의]

▶ 간사

- 심의사유 및 심의사항을 설명함

→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재단 인권경영 선언문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공개적 의견 수렴 및 외부 전문기관 의견 반영한 후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함

▶ ○○○

- 인권경영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카드뉴스, SNS 등을 활용하여 인권경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필요

(제1호 의안, 이상 논의를 마치고 참석위원 5명 중 5명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을 선언함)

[제2호 의안: 인권경영 지침(안) 심의]

▶ 간사

- 심의사유 및 심의사항을 설명함

→ 이해관계자의 공개적 의견 수렴 및 외부 전문기관 의견 반영한 후 일부 개정 3건 포함된 인권경영지침(안)을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함

▶ ○○○

- 지침 제29조 내용이 “~실시한다” 인데 기관 사정에 따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“~실시할 수 있다” 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 필요

▶ ○○○

-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설명

→ 국가인권위원회 매뉴얼 및 인권경영 중요성에 따라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음

▶ ○○○

- 인권영향평가 관련 타기관 사례 설명

→ 타 기관에서도 “~실시한다” 로 되어있는 규정이 많으며, 더 구체적으로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

▶ ○○○○

- 올해 인권영향평가 5월~8월 진행되었고, 향후 비슷한 시기에 계속 진행된다면 재단에서는 연 1회 정기적 실시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

▶ ○○○○

- 제9조제2항에 “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” 로 조문 개정 수정안 발의

(제2호 의안, 이상 논의를 마치고 참석위원 5명 중 5명 전원 찬성하여 제9조제2항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을 선언함)

[제3호 의안: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]

▶ 간사

- 심의사유 및 심의사항을 설명함

→ 2023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하고자 함

▶ ○○○○

- 평가결과가 전체 평균 93.6점이 나왔는데, 기관별로 평가지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절대 수치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재단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였는가와 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발견하고 개선하였는가가 중요함

▶ ○○○○

- 협력기관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 추진 계획 질의

▶ ○○○○

- 계약 관계에서 기존 청렴이행서약서 등도 받고 있지만 인권존중 의무이행 서약서를 추가하여 인권보호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임

▶ ○○○○

-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조치하는지 질의

- ▶ ○○○○
 - 윤리감사팀에서는 인권분야도 담당하고 있지만 조사·감사 업무도 수행함
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및 조치 가능함
- ▶ ○○○○
 - 계약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매뉴얼 필요
- ▶ ○○○○
 -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
- ▶ ○○○○
 - 협력기관 모니터링은 단기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. 우선은 인권영향평가
결과보고서의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반영 필요
 - 인권존중의무이행 서약서 10번의 ‘협조’ 내용을 인권경영 지침의 ‘시정한다’
내용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에 대한 논의 필요
- ▶ ○○○○
 - 지침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고,
서약서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
내용으로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서약서 및 지침이 동시에 위반되는
상황으로 해석 가능함
서약서는 인권존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접근할 필요성 있음
- ▶ ○○○○
 - 인권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직원들에게 공유되었는지 질의
- ▶ ○○○○
 - 완료보고회 진행하였음
- ▶ ○○○○
 - 인권경영체계 구축 이후 점차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필요

(제3호 의안, 이상 논의를 마치고 참석위원 5명 중 5명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을 선언함)

[제4호 의안: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]

▶ ○○○○

- ○○○○ 위원 평가대상 사업 중 하나인 ‘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’ 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기피 결정

▶ 간사

- 심의사유 및 심의사항을 설명함
→ 2023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하고자 함

▶ ○○○○

- 3개 평가 사업이 점수가 다 동일하게 평가된 것에 대한 설명 요청

▶ ○○○○

- 평가지표를 각 평가대상 부서에 배포하였고, 각 부서에서 인권영향평가 담당자 작성 및 팀장 검토 후 제출한 자체평가 자료를 용역사에서 검증 및 평가함

▶ ○○○○

- 평가를 할 때 개별로 의견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
대표성 있는 사람을 참여하는 방법 제안함
- 주요사업 평가 시 같은 사업을 추적하여 평가하는 것보다는 여러가지 사업을 평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권리스크를 찾는게 더 의미가 크다고 봄

(제4호 의안, 이상 논의를 마치고 참석위원 4명 중 4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을 선언함)

- 작성일) 2023. 9. 21.(목) 14:00 ~ 16:30
- 작성자) ○○○○
- 확인자) ○○○○